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Q&A**



법제처에서는 2008년 초부터 국민이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을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정부 각 기관의 업무 중심으로 복잡하게 얽힌 법령간의 관계를 국민의 생활 중심으로 재분류하고, 법률전문가의 시각에서 쓰인 어려운 법령의 내용을 국민의 눈높이에서 쉽게 해설하여 제공하는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시스템(http://oneclick.law.go.kr)』을 구축하여 2012년 11월 현재 서술형 190건, 사례형 21건 등 총 211건의 생활분야에 관한 콘텐츠를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이 코너에서는 서비스 중인 생활분야에 대한 주요 궁금 사항에 대하여 질문과 답변의 형식을 빌려 그 주요내용을 차례로 소개하고자 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시스템(http://oneclick.law.go.kr)』에 접속하셔서 '신용카드 이용자' 콘텐츠에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1. 요즘은 과거에 비해서 신용카드 발급을 일부 제한하고 있다고 하던데, 신용카드는 누구나 발급받을 수 있는 건가요?

종전에는 만 18세 이상이면 누구든지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올해 10월 「여신전문금융업법」이 일부 개정되어 일정한 신용도가 있는 「민법」상 성년, 즉 만 20세가 된 사람만이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신용도 있는 자란 신용평가사가 평가한 신용등급이 1등급에서 6등급 이내에 해당하는 자를 말하는데 개인의 신용등급은 부채수준, 연체정보, 금융회사별 대출이용사실과 활용비율을 보여주는 신용형태, 신용거래기간 등을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다만, 개인신용등급이 6등급 이하라도 월 가처분소득이 5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신용카드를 발급 받을 수 있으며, 체크카드나 최고 결제액을 30만원으로 하는 소액신용카드의 경우에는 신용등급에 관계없이 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발급연령은 만20세 이상이 원칙이나, 18세 이상의 자가 재직을 증명하거나 보호대상 아동의 자립지원 등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적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미성년자도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2. 요즘 보이스 피싱이나 인터넷 해킹 등으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이런 개인정보를 이용해서 신용카드를 부정발급 받은 사건이 있었는데요, 부정발급 되어 사용된 카드이용대금은 누가 갚아야 하는 건가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르면 신용카드사는 신용카드의 발급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해서 신용카드를 발급할 수 있으며, 신용카드를 발급함에 있어서 본인 여부를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명의도용에 의해 신용카드가 발급되어 결제가 이루어진 경우, 원칙적으로 신용카드 명의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다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비밀번호를 누설하거나 신용카드를 양도 또는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한 경우에는 개인이 모든 책임을 부담하게 되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3. 신용카드사가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면서 경품을 제공하거나 연회비를 대납해 주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건 불법 아닌가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르면 신용카드 발급시 신용카드 연회비의 10%를 초과하는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모집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또한 공원 등 공공장소에서의 모집행위도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또는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4. 본인 명의로 발급 받은 신용카드를 가끔씩 가족에게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나요?

원칙적으로 신용카드는 명의자만이 사용할 수 있으며, 이를 대여하거나 양도 또는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본인 이외에 배우자나 가족 등 다른 사람에게 카드를 사용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 신용카드를 타인에게 빌려주거나 사용하도록 하던 중에 카드를 도난, 분실되었다면 그 피해금액에 대해서 보호받을 수 없기 때문에 가족이라도 카드를 대여함에 신중하셔야 합니다. 만약 필요하다면 별도의 가족카드를 발급받아서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5.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할부로 물건을 구입한 후에 마음이 바뀌어서 거래를 취소하고 싶은데, 할부거래 취소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서 어떻게 규율하고 있나요?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르면 신용카드 할부거래 대금이 20만원 이상인 물품이나 서비스의 구입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계약서를 교부받은 날 또는 계약서를 교부 받지 않은 경우에는 목적물의 인도 등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할부 계약에 관한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이를 "할부철회권"이라고 합니다. 할부철회권을 행사할 경우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은 서면을 발송한 날부터이며, 철회는 반드시 서면으로 하여야 합니다.

다만, 자동차, 냉장고, 세탁기, 낱개로 밀봉된 음반, 비디오물 등 그 물건을 사용함으로써 그 물건의 그 가치가 현저히 감소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철회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6. 상점에서 신용카드로 결제를 하려고 하는데, 별도의 추가수수료를 부담하라고 하는 경우도 있던데요, 신용카드 결제 시 수수료를 구매자에게 부담시킬 수도 있는 건가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에서는 신용카드가맹점은 가맹점수수료를 신용카드회원이 부담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금 결제가 아닌 신용카드 결제를 한다는 이유로 수수료를 추가로 부담하게 하는 등 불리한 대우를 해서는 안 되며, 이러한 차별대우를 한 자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의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7. 신용카드로 세금이나 과태료도 낼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구체적인 납부요건이나 방법은 어떤지 알려주세요.



「국세기본법」과 「지방세법」, 「관세법」에서는 국세, 지방세, 관세 등 세금 납부자가 신용카드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세금은 국세납부대행기관인 금융결제원의 카드로택스(http://www.cardrotax.or.kr)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 하여 납부할 수 있으며, 전국의 세무관서에 설치된 신용카드 단말기로도 납부가 가능합니다. 다만, 국세나 관세의 경우에는 세액이 1,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이 밖에도 「도로교통법」을 위반하여 과태료를 납부해야 하는 경우에 과태료 납부금액이 200만원 이하인 경우 과태료 납부대행기관을 통해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과태료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카드로택스(www.cardrotax.or.kr)에 접속 한 후 신용카드로 납부가 가능하며, 공인인증서가 없거나 인터넷 이용이 어려울 경우에는 가까운 경찰서, 지구대를 방문하여 신용카드로 편리하게 과태료를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8. 카드 이용대금을 매달 조금씩만 결제해도 되는 서비스가 있다던데, 무엇인가요?



이른바 리볼빙 결제라고 합니다. 이 서비스는 카드 이용대금 중 일부만 결제한 뒤 남은 금액은 이자만 내고 다음달로 결제를 넘기는 방식으로서 최근 많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서비스는 일시적으로 잔액이 부족한 경우에는 유용할지 모르겠으나, 실제로 갚아야 할 부채가 계속 늘어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리볼빙 서비스의 수수료는 최고 28.8%로서 상당히 높은 편이고, 리볼빙으로 결제하고 남은 금액에 대해서만 이자가

붙는 것이 아니라, 리볼빙 수수료가 전월에 갚아야 할 원금에 합산되는 과정에서 매월 갚아야 할 원금이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먼저 금융감독원은 앞으로 신규 현금서비스 리볼빙을 할 수 없도록 하는 방침을 시작으로 하여, 현재 최저 1%인 최소 결제비율을 10% 이상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카드사별로 다양하게 표시되고 있는 리볼빙 결제 명칭도 '리볼빙 결제'로 일원화 하는 등 이를 제한하는 다양한 대책이 마련되고 있습니다.



9. 신용카드의 도난 또는 분실에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신용카드 회원이 카드를 분실하거나 도난을 당한 경우에는 가장 먼저 카드사에 전화 또는 서면 등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회원이 분실신고나 도난신고를 한 경우 그 사고신고 접수일부터 60일 전을 기준으로 그 이후에 사용된 금액에 대해서는, 그러한 도난이나 분실에 대해 신용카드 회원에게 과실이 없다면 카드사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회원이 분실이나 도난된 사실을 알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신고를 지체하여 부정사용의 피해가 확대된 경우에는 회원의 과실에 의한 것으로 보아 경우에 따라서는 보상에서 제외될 있습니다.

또한, 신용카드 뒷면에 서명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서명한 경우와 달리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즉시 뒷면에 서명을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10. 최근 해외여행객이 늘어나고 있는데, 해외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할 때에 알아두면 좋은 정보는 없나요?

신용카드에는 국내에서만 사용가능한 국내전용카드와 해외에서도 사용가능한 국내외 겸용카드가 있습니다. 국내외 겸용카드를 사용하여 해외에서 결제를 할 때에는 원화로 결제하는 방법과 현지 화폐로 결제하는 방법 중에서 한 가지를 선택하여 결제하게 됩니다.

이 때에는 원화가 아닌 현지 화폐를 기준으로 결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원화로 결제할 경우에는 3~5%의 수수료가 붙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해외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할 때 '원화로 결제하겠느냐'고 물어보면 '현지화로 결제해달라.'고 하는 것이 수수료 손해를 피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11. 신용카드의 소득공제 범위와 소득공제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신용카드로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직불카드를 사용한 금액을 합한 금액이 연간 총 급여의 25%(최저사용금액) 이상을 사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신용카드의 경우에는 사용액의 20%, 직불카드·체크카드의 경우에는 30%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전통시장에서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용액의 30%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부터라도 신용카드보다는 체크카드를 쓰는 게 유리합니다.
그리고 공제한도는 연간 300만원 또는 총급여액의 20% 중 적은 금액으로 합니다. 다만, 전통시장 사용분에 있어서는 최대 100만원까지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연봉이 3000만원인 A씨가 신용카드를 1000만원, 체크카드를 300만원, 전통시장에서 100만원을 사용했다면, 일단 최저사용금액, 즉 3000만원의 25%인 750만원보다 많이 사용했으므로 소득공제의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그 공제금액은 신용카드 사용분의 20%인 200만원과 체크카드 사용분의 30%인 90만원, 그리고 전통시장 사용분의 30%인 30만원을 더한 320만원에서 연봉의 25%인 750만원의 20%인 150만원을 뺀 금액 즉 170만원이 소득공제대상금액이 됩니다.

만약 신용카드 사용분이 연봉의 25%보다 적은 경우에는 다음의 산식이 적용됩니다.

> 공제금액 = (전통시장사용분 × 30%) + (직불 · 선불카드사용분 × 30%) + (신용카드사용분 × 20%) – [(신용카드사용분 × 20%) + (최저사용금액 – 신용카드사용분) × 30%]

맞벌이 부부라면 급여액이 적은 사람의 카드를 집중해서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A씨의 부인이 4천만원의 급여를 받는다면, A씨의 사용 내역과 같다면, 320만원에서 연봉의 25%인 1000만원의 20%, 즉 200만원을 뺀 금액인 120만원이 소득공제대상금액이 되게 됩니다.

각 가정에서 내가 얼마나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는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nts.go.kr)의 연말정산자동계산을 이용하시면, 보다 쉽게 구체적 공제 예상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가족카드는 결제자 기준이 아니라 사용자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맞벌이 부부의 남편이 결제자라 하더라도 부인명의로 발급받은 가족카드는 아내의 공제대상이 됩니다.



12. 신용카드 중도 해지 시 연회비는 환불받을 수 있나요?

신용카드를 중도해지 할 경우 연회비를 받을 수 있는지에 관하여 카드사별로 환불규정이 다릅니다. 또한 사용자의 연회비 환불신청 여부에 따라 환불받는 경우도 있고 환불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최근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19개 카드사 중 신용카드 중도 해지 시 회원의 별도 요청 없이 연회비를 환불해 주는 카드는 4곳에 불과하고, 신용카드 중도 해지 시 이용실적이 없으면 환불을 해주는 카드사와, 고객의 요청이 있으면 바로 환불 결정을 하는 카드사도 있습니다. 몇몇 카드사는 특정 조건을 붙여 환불을 하고 있었고, 고객 요청 시 영업점에 판단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연회비를 환불해주는 카드사도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이에 대해서는 표준약관 개정을 통해 금융소비자들의 불편과 불이익을 줄여나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13. 신용카드를 해지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나요?

일반적으로 신용카드는 해당 신용카드사의 자동응답전화나 홈페이지를 통해서, 또는 해당 은행을 직접 방문하시어 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금까지 카드해지를 저지할 목적으로 신용카드사에 카드해지 편의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거나 해지절차를 복잡하게 하는 등의 문제가 있어 왔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금융감독원 등은 신용카드 해지 지연행위를 금지하도록 하는 한편, 1년 동안 이용실적이 없는 휴면 신용카드는 회원의 카드 해지 또는 유지 의사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친 뒤 카드사가 휴면 신용카드를 해지하도록 하는 제도를 마련하였습니다.